

의견제출서

공 고 번 호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-698호					
공 고 명	이문동 256-136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의 제한(안)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					
의견제출자	성 명		생년월일		전화번호	
	주 소					
	관련지번					
의견내용						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(안)에 대한 의견을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출합니다.

2026년 이익 이익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동대문구청장 귀하

※ 의견 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